

1.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등

Q-1. ‘중소기업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중기부 R&D 과제 수 1개 제한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.

-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‘25년 신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되며 ‘25년 이전에 협약하여 현재 수행 중인 과제는 동시수행 과제 수 계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.

※ 자세한 사항은 공고의 [붙임1]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확인

Q-2. ‘지방청 R&D’ 과제와 ‘여성참여활성화 R&D’ 과제를 동시에 신청 가능한가요?

- 아니오.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지방청 R&D와 여성참여활성화 R&D 과제를 동시에 신청이 불가합니다.

※ 자세한 사항은 공고의 주의사항 참고

Q-3.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업력 7년 이하인 경우만 신청 가능한가요?

- 네.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첫걸음 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업력 7년 이하이고, 매출액 20억원 미만이면서, 중소벤처기업부 R&D를 처음 수행하는 중소기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단,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업력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합니다.

※ 자세한 사항은 공고 [참고 1] 신산업 창업 분야 참고

Q-4.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업력이 7년 초과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?

- 네.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첫걸음 과제의 공동자격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적용합니다.

Q-5.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대학이 참여 가능한가요?

- 아니오.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합니다.

Q-6. 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신청 불가한가요?

- 아니오.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첫걸음 과제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예외 적용됩니다.(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제외)
- 또한,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은 예외 적용됩니다.(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도 예외 적용)

Q-7.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본사 소재지가 ‘제주’인 경우, 지방청 R&D 과제에 신청 가능한가요?

- 네. 광주·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고로 신청 가능합니다.

※ 자세한 사항은 공고 [붙임 2] 세부 지원내용 참고

Q-8.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여성기업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,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. 여성참여활성화 R&D과제에 신청 가능한가요?

- 신청하고자 하는 여성참여활성화 R&D과제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 비율이 50%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.

※ 자세한 사항은 공고 [붙임 3] 세부 지원내용 참고

2. 연구개발비 산정 등

Q-1. ‘인건비’, ‘재료비’, ‘연구활동비’ 등 연구개발비의 산정기준이 공고문에 안보이는데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가요?

- 동 사업의 연구개발비 세부 산정기준은 “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”을 적용하며, 해당 지침은 아래의 경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※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 ▶ 사업정보 ▶ 사업관련 서식·자료 ▶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

Q-2. 주관연구개발기관(중소기업)이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과제의 총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하나요?

- 주관연구개발기관(중소기업)에 배정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맞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됩니다.
 -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총 연구개발비(정부지원연구개발비 + 기관부담연구개발비)의 75% 이내로 구성되어야 합니다.

<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(첫걸음) 연구개발비 >

(단위: 천원)

구 분	정부지원 연구개발비	기관부담연구개발비			연구개발비
		현금	현물	합계	
1차년도	100,000	3,400	30,000	33,400	133,400
2차년도	100,000	3,400	30,000	33,400	133,400
합 계	200,000	6,800	60,000	66,800	266,800
연구개발비 비중	75%	2.5%	22.5%	25%	100%

Q-3. 주관연구개발기관(중소기업)이 연구실운영비 계상이 가능한가요?

- 영리기관이 연구실운영비를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 과제 신청·접수 시 연구실운영비 활용·계획을 제출하여 평가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※ 자세한 사항은 [붙임 4] 제출 서식 참고

3. 신청서식 및 기타

Q-1.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대학인 경우에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나요?

-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(공사)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 다만, IRIS 시스템에 필수 제출이므로 ‘공란’ 파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Q-2. 지방청 R&D 특화지표와 관련하여 해당되지 않는 과제도 ‘특화지표 검토요청서’를 작성해야 하나요?

- 연구개발계획서 및 특화지표 검토요청서에 ‘해당사항 없음’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Q-3.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와 보안등급 자체 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서 의무확인서는 필수 제출인가요?

- 네.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의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는 수행·신청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필수 제출입니다.
- 또한,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서 의무 확인서는 보안과제 여부 상관없이 필수 제출이며, 보안서약서(첨부2)는 자체점검 결과 보안과제에 해당할 경우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Q-4. 연구개발계획서는 20페이지 이내로 작성해야 하나요?

- 네.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은 20페이지 이내로 작성해야 하며,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(단, ① 과제 개요, ② 자가진단, 9. 지방청 특화지표 검토 자료, [붙임1]~[붙임3]은 20페이지에서 제외합니다)